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와 정책 방향¹⁾

The Income Gap between Person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n Korea

이원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소득 수준이 낮고 빈곤율이 높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1~2018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살펴보았다.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노동소득 격차가 시간에 따라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장애인-비장애인 가처분소득 격차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재산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은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변화시키지 못한 반면, 공적 이전소득은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다소 완화하였다. 또한 공적 이전소득은 횡단적으로 장애인-비장애인 극빈 격차를 크게 축소할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장애인-비장애인 극빈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를 축소하려면 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1.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비장애인 또는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고 빈곤율이 높다는 사실은 잘 알

려져 있고(김태완, 2010; 유완식, 2007; 윤상용, 김태완, 2009; 이선우, 2009),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집단 내 불평등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기도 하였다(조윤화, 2014).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2011~2018년의 최근

1) 이 글은 오욱찬, 김수진, 김현경, 이원진, 오다은. (2020).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보고서의 제2장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글에 제시한 그림의 구체적인 수치는 오욱찬 외(2020)의 보고서에 수록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이를 분석한다.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및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2018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등 최근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여러 차례 나타났다. 이 글의 분석 결과는 최근 십여 년간의 소득 보장제도 변화가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둘째, 근로연령층(18~64세)과 고령층(65세 이상)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경제활동 연령 인구와 은퇴 연령 인구의 소득 수준 및 구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과 같은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와 기초연금과 같은 노인 소득보장제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적 이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을 구분한 분석의 필요성이 크다. 요컨대, 이 글은 2011~2018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및 빈곤 격차를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분석 방법

이 글은 한국복지패널조사 7~14차 자료를 분석하는데, 이는 소득 연도 기준 2011~2018년에 해당한다. 또한 이 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개인 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분석을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여 개인 단위로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가구 단위로 측정되지만 가구소득을 균등화하여 개인에게 할당한 소득을 개인의 경제

표 1. 소득의 정의

개인 노동소득	가구 노동소득	일차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농림축산업·어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세금 및 사회보험료 (-)					

주: 고용주·자영자 소득, 농림축산업소득, 어업소득, 가처분소득의 음수는 0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음.

- 개인 노동소득²⁾: 가구원별로 조사된 근로자 소득, 고용주·자영자 소득, 기타 근로소득의 합

- 가구 노동소득: 개인 노동소득의 가구 내 합산액과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합

- 재산소득: 이자 및 배당금, 임대료,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부모 또는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민간단체로부터의 보조금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 고용보험 관련 급여, 산재보험 관련 급여, 장애 관련 급여,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2018년), 학비 지원, 국가유공자 보조금, 농어업 정부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2015년 이후),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보조, 통신비 감면·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타 정부보조금

-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

자료: 오옥찬 외. (2020).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9. <표 2-1>.

2) 각 연도별로 개인 노동소득이 존재하는 사례의 중위값의 10배로 개인 노동소득을 탑코딩(top coding)하였다.

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바, 이 글은 이러한 접근을 따른다. 단,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거하는 가구가 존재하므로 장애인의 균등화 가구소득에 비장애인의 노동소득이 포함될 수 있고, 비장애인의 균등화 가구소득에 장애인이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글의 분석은 18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18~64세와 65세 이상 분석 결과를 각각 보고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수집한 각종 소득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표 1>과 같이 여러 소득 항목을 정의하였다. 모든 소득 항목은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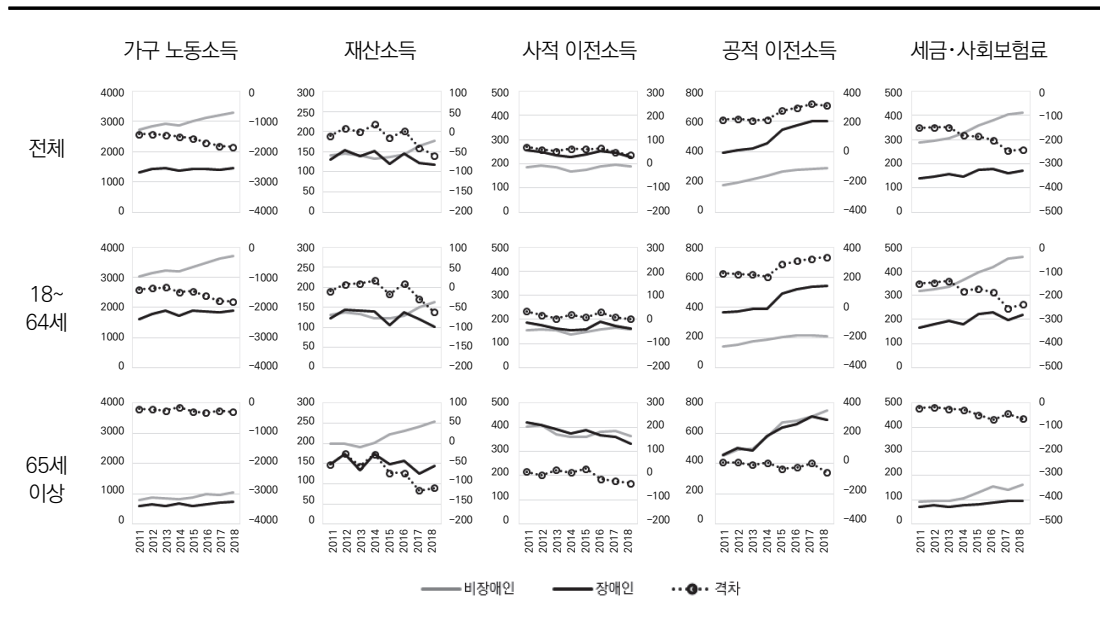
여 분석한다. 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한 빈곤선은 전체 인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와 30%로 설정하였다.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

[그림 1]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원천별 평균을 제시하였다. 우선 가구 노동소득을 살펴보면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시간에 따른 증가량이 훨씬 컸기 때문에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2011년 연 1417만 원에서 2018년 연 1839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노동시장 외부의

그림 1. 소득 원천별 평균

(단위: 만 원/년, 2018년 실질가격)



주: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임. 격차는 장애인 수치에서 비장애인 수치를 차감한 값으로 오른쪽의 축을 기준으로 함. 자료: 오욱찬 외. (2020).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4. [그림 2-1]의 일부.

공적 개입이 없다면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가 시간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연 1405만 원에서 1802만 원으로 확대된 반면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 격차는 연 201만 원에서 298만 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가구 노동소득의 장애인-비장애인 격차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 먼저 재산소득 평균을 분석한 결과 2011~2018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평균이 각각 연 134만~178만 원, 연 119만~154만 원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산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의 경우에는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평균이 크게 나타나, 생애 과정에서 축적한 자산에 의존하는 재산소득이 장애인-비장애인 노후소득 격차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장애인 평균이 그다지 변화하지 않은 반면 비장애인 평균이 최근 증가하여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확대되었다. 단, 재산소득의 규모가 크지 않고 시간에 따른 변동이 커서 추이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적 이전소득 평균을 살펴보면 근로연령층과 고령층 집단 내 장애인-비장애인 격차는 크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사적 이전소득을 많이 받는 고령층의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높기 때문에 전체 집단의 경우 장애인의 사적 이전소득 평균이 비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사적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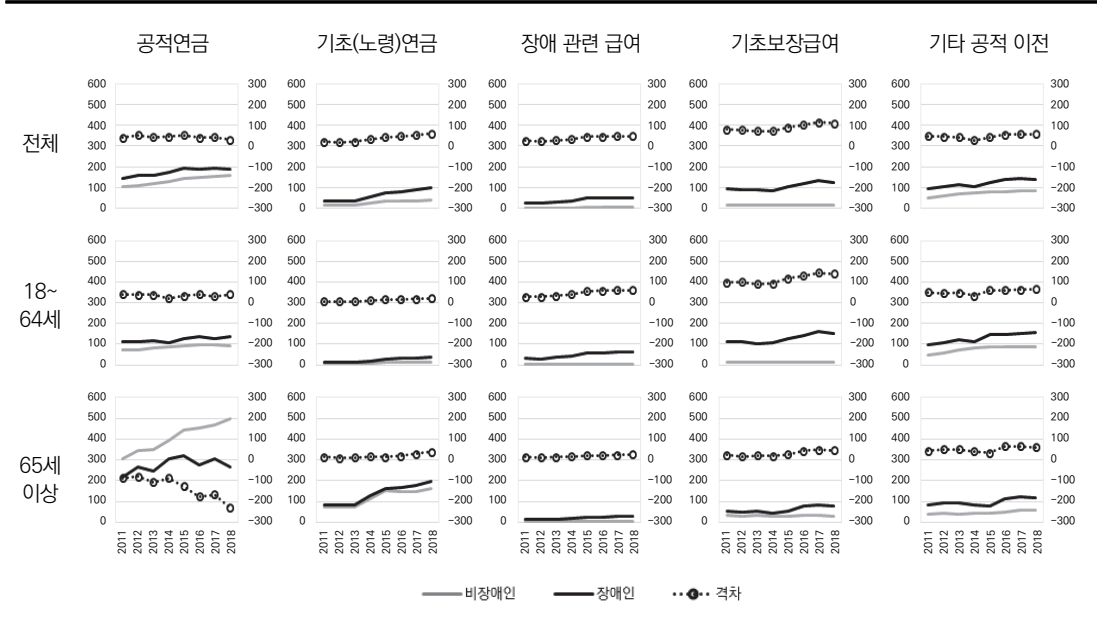
전소득은 전체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일정하게 축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고령층의 사적 이전소득 평균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장애인의 사적 이전소득 평균 감소량이 비장애인보다 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시간에 따른 사적 부양 약화에 따라 전반적인 사적 이전소득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사적 이전소득이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효과 역시 점차 약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적 이전은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에 개입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특히 다른 소득보장제도에 비해 공적연금과 기초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적 이전소득 분석 결과는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을 구분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근로연령층 분석 결과를 횡단적으로 살펴보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평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많은 공적 이전소득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특히 2014~2015년에 장애인의 공적 이전소득 평균이 연 391만 원에서 492만 원으로 약 100만 원이나 증가한 결과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연 203만 원에서 286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근로연령층 장애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2]에

그림 2. 공적 이전소득 항목별 평균

(단위: 만 원/년, 2018년 실질가격)



주: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임. 격차는 장애인 수치에서 비장애인 수치를 차감한 값으로 오른쪽의 축을 기준으로 함. 구체적 소득 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음.
 - 공적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 기초(노령)연금: 2014년 6월 이전 기초노령연금, 2014년 7월 이후 기초연금
 - 장애 관련 급여: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기초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2015년 6월 이전 현금급여 총액, 2015년 7월 이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료: 오욱찬 외. (2020).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복지정책의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2. [그림 2-2].

공적 이전소득 항목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근로연령층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 관련 급여, 기초보장급여, 기타 공적 이전소득을 더 많이 받고, 공적연금을 제외한 여러 항목 평균의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대체로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십여 년간의 소득보장제도 강화가 근로연령대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음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2011~2018년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 축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기초보장급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급여 수준이 증가하였는데, 근로연령대 비장애인은 수급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반면 근로연령대 장애인의 기초보장급여 평균은 2014년 연 106만 원, 2015년 연 130만 원, 2016년 연 143만 원, 2017년 연 16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2014년 7월에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급여 수준이 최대 월 20만 원으로 크게 인상되었고,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의 급여 수준 역시 동일하게 인상되었다. 이에 2013~2015년 근로연령대 장애인의 장애 관련 급여 평균은 연 36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 평균은 연 13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증가하였다.³⁾ 그 밖에 2014~2015년에는 근로연령대 장애인의 기타 공적 이전소득과 공적연금 평균이 각각 연 34만 원, 20만 원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변화가 누적된 결과 2014~2015년에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공적 이전소득 평균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고령층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횡단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적 이전소득 평균이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경력이 있는 비장애인이 노년기에 더 많은 공적연금을 받는 효과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 장애인이 더 많은 기초(노령)연금, 장애 관련 급여, 기초보장급여, 기타 공적 이전소득을 받는 효과가 서로를 상쇄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공적 이전소득 평균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고령층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적 이전소득 증가의 원인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비장애인은 2011~2018년 공적연금 평균이 연 305만 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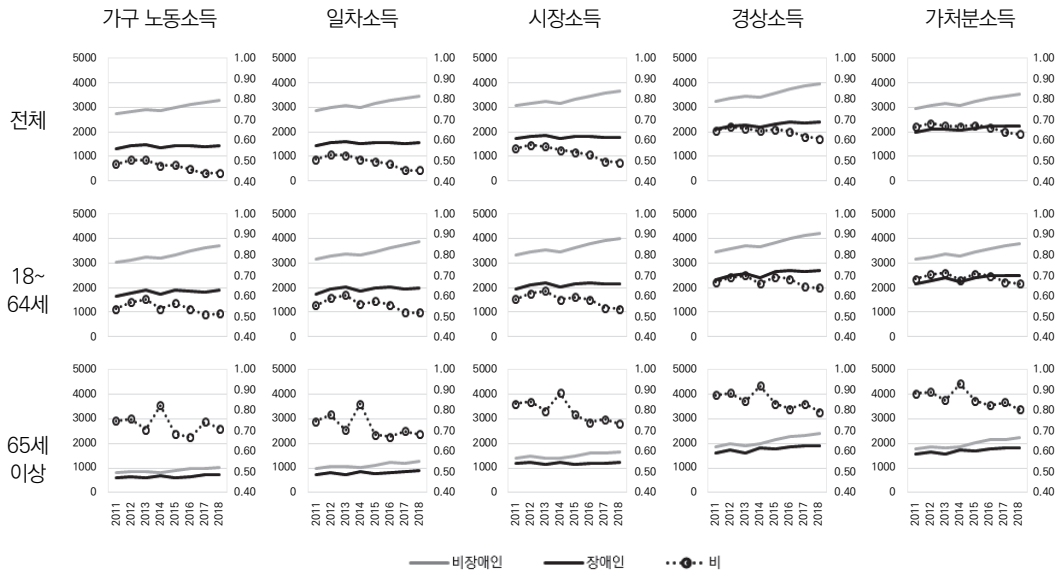
서 연 498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장애인은 2015년 이후 공적연금 평균이 약 연 300만 원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간에 따른 공적연금의 성숙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대신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기초(노령)연금, 장애 관련 급여, 기초보장급여, 기타 공적 이전소득과 같이 소득조사를 수반하는 소득보장제도의 확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13~2015년 급여 인상의 영향은 대체로 고령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유사하였지만, 2018년 급여 인상의 영향은 장애인이 조금 더 컸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2015~2018년 고령 장애인의 기초보장급여 평균이 연 55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증가하였지만 비장애인의 기초보장급여 평균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그림 3]에는 가구 노동소득, 일차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전체 집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가구 노동소득 평균은 연 1324만~1471만 원으로 비장애인의 44~50%로 나타났다. 그런데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비장애인의 가구 노동소득 평균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결과 가구 노동소득 평균의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비율이 2013년 50%에서 2018년 44%로 감소하였

3) 65세 미만 장애인이 직접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는 없지만, 노인 배우자나 노인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림 3. 소득별 평균

(단위: 만 원/년, 2018년 실질가격, 비율)



주: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임. 비(ratio)는 장애인 수치를 비장애인 수치로 나눈 값으로 오른쪽의 축을 기준으로 함. 자료: 오욱찬 외. (2020).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5. [그림 2-3].

다. 즉,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가구 소득 격차가 201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된 것이다.

다음으로 가구 노동소득에 재산소득을 합산한 일차소득의 평균을 살펴보자. [그림 1]에서 확인하였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재산소득 평균이 비슷하기 때문에, 재산소득을 합산하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소득 평균 비율이 연도별로 1~3% 포인트 증가한 45~53%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산소득은 횡단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를 감소시켰지만, 시간에 따라 상대적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변화시키지

는 못했다. 한편 고령층의 경우에는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재산소득 평균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그림 1) 2017~2018년에는 재산소득이 고령 장애인과 고령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적 이전소득 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를 감소시켰다. 예를 들어 2011년 일차소득 평균의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비율은 50%였지만, 사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시장소득 평균의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비율은 56%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시장소득 평균의 비장

개인 대비 장애인 비율이 2011년 56%에서 2018년 4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적 이전소득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오히려 약간 강화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특히 고령층 시장소득 평균의 장애인 대비 장애인 비율이 2011년 83%에서 2018년 73%로 10%포인트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그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고령층의 사적 이전소득 평균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경상소득 평균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이전소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를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보다 더 크게 감소시켰다. 경상소득 평균의 장애인 대비 장애인 비율은 61~67%로 시장소득 평균에 비해 9~12%포인트나 증가하였다. 둘째, 공적 이전소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다소 완화한다. 2011~2018년 시장소득 평균의 장애인 대비 장애인 비율은 56%에서 49%로 7%포인트 감소하였지만, 경상소득 평균의 장애인 대비 장애인 비율은 65%에서 61%로 4%포인트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상소득에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가 조금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평균의 장애인 대비 장애인 비율은 2011년 66%에서 2018년 63%로 약 3%포인트 감소하였다. 요컨대, 장애인의 가처분소득 평균은 연

1966만~2224만 원으로 비장애인의 60%대 중반 수준이고,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상대적인 격차가 시간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가처분소득 평균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4.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빈곤 격차

<표 2>와 <표 3>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빈곤율을 분석하였다. 표에는 일차소득에서 시작하여 누적적으로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하고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할 때의 빈곤율 변화를 보고하였는데, 마지막 단계의 빈곤율이 가처분소득 빈곤율에 해당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빈곤 격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을 살펴보면 비장애인은 약 13~14%로 시간에 따라 거의 변화하지 않은 반면 장애인은 2011년 38.47%에서 2018년 42.81%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가 2011년 25.25%포인트에서 2018년 30.15%포인트로 확대되었다. 중위소득 30% 기준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에 비해 절대적인 수준은 낮지만 장애인-비장애인 격차의 횡단적·시계열적 패턴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단, 장애인 빈곤율의 시간에 따른 변동이 크고 특히 2018년의 증가량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자료의 불안정으로 추이가 다소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주의를

표 2. 소득 원천별 빈곤율 감소 효과(빈곤선: 중위소득 50%)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비장애인	일차소득	21.08	20.66	22.07	21.23	21.15	20.97	20.47	20.51
		+사적 이전소득	16.90	16.53	18.27	17.61	17.37	17.33	17.00	17.33
		-4.18	-4.13	-3.80	-3.62	-3.78	-3.63	-3.47	-3.18	
		+공적 이전소득	11.88	11.47	12.15	11.51	11.14	11.28	10.71	11.40
		-5.02	-5.06	-6.13	-6.10	-6.23	-6.05	-6.28	-5.93	
	장애인	-세금· 사회보험료	13.22	12.89	14.08	12.70	12.76	12.73	12.51	12.66
		1.34	1.42	1.93	1.19	1.62	1.45	1.80	1.26	
		일차소득	58.66	55.41	56.79	57.77	59.12	59.24	60.16	59.70
		+사적 이전소득	51.78	49.85	51.82	53.28	52.68	54.46	55.89	56.25
		-6.87	-5.56	-4.97	-4.49	-6.44	-4.77	-4.28	-3.46	
장애인	+공적 이전소득	35.62	37.23	38.87	37.84	36.49	37.25	37.17	40.93	
	-16.16	-12.62	-12.95	-15.45	-16.19	-17.21	-18.72	-15.32		
	-세금· 사회보험료	38.47	39.18	40.92	38.73	38.57	38.68	39.42	42.81	
	2.85	1.94	2.04	0.90	2.07	1.42	2.25	1.88		
	일차소득	13.48	13.25	14.33	13.02	12.91	12.58	11.83	11.44	
18~ 64세	비장애인	+사적 이전소득	10.45	10.14	11.26	10.31	9.87	9.73	9.11	9.06
		-3.03	-3.12	-3.07	-2.71	-3.04	-2.85	-2.72	-2.38	
		+공적 이전소득	6.94	6.78	7.02	6.36	6.19	6.44	5.64	6.15
		-3.51	-3.35	-4.24	-3.95	-3.68	-3.29	-3.46	-2.91	
		-세금· 사회보험료	8.27	8.17	8.93	7.45	7.70	7.81	7.30	7.23
	장애인	1.33	1.39	1.92	1.09	1.51	1.37	1.66	1.08	
		일차소득	49.87	45.46	45.51	47.83	47.15	47.66	47.61	48.17
		+사적 이전소득	44.58	41.60	41.62	44.64	40.91	44.03	45.18	45.83
		-5.28	-3.86	-3.89	-3.19	-6.23	-3.63	-2.43	-2.33	
		+공적 이전소득	28.74	30.72	29.89	30.91	27.60	28.04	26.91	30.79
장애인	-15.84	-10.88	-11.73	-13.73	-13.31	-15.99	-18.27	-15.04		
	-세금· 사회보험료	32.32	33.00	32.14	31.85	29.91	29.47	29.55	33.44	
	3.58	2.28	2.25	0.94	2.31	1.43	2.64	2.65		
	일차소득	72.54	71.34	73.21	73.76	72.34	71.89	70.67	70.87	
	65세 이상	비장애인	+사적 이전소득	60.62	60.32	64.64	64.34	63.93	63.50	62.83
-11.92			-11.02	-8.57	-9.42	-8.41	-8.38	-7.84	-7.59	
+공적 이전소득			45.34	43.57	46.05	44.48	41.90	40.71	40.18	40.58
-15.28			-16.75	-18.59	-19.86	-22.03	-22.80	-22.65	-22.70	
-세금· 사회보험료			46.81	45.19	48.09	46.30	44.15	42.62	42.74	42.84
장애인		1.46	1.62	2.04	1.82	2.25	1.92	2.56	2.25	
		일차소득	79.93	77.47	80.19	77.61	81.29	79.70	80.73	78.18
		+사적 이전소득	69.21	68.16	72.99	70.53	74.48	72.91	73.43	72.92
		-10.73	-9.32	-7.20	-7.08	-6.81	-6.79	-7.30	-5.26	
		+공적 이전소득	52.30	51.69	57.51	51.66	52.95	53.54	53.99	57.17
장애인	-16.91	-16.47	-15.48	-18.87	-21.52	-19.37	-19.44	-15.75		
	-세금· 사회보험료	53.35	52.88	59.11	52.47	54.59	54.96	55.59	57.82	
	1.06	1.19	1.60	0.82	1.64	1.41	1.60	0.64		

주: 균등화소득의 개인 단위 빈곤율. 빈곤선을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고정된 상태에서 각 소득의 빈곤율을 계산하였음. 하단의 수치는 전 단계 빈곤율과의 차이를 의미함.

자료: 오욱찬 외. (2020).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2-53. (표 2-8).

표 3. 소득 원천별 빈곤율 감소 효과(빈곤선: 중위소득 30%)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비장애인	일차소득	13.28	13.14	13.88	13.65	14.16	13.85	13.60	13.82
		+사적 이전소득	8.57	8.57	9.52	9.72	10.03	9.69	9.73	10.40
		-4.70	-4.57	-4.36	-3.93	-4.13	-4.16	-3.87	-3.42	
		+공적 이전소득	3.66	3.71	4.44	4.02	3.56	3.50	3.51	3.64
		-4.91	-4.87	-5.08	-5.70	-6.47	-6.19	-6.22	-6.76	
	장애인	-세금· 사회보험료	4.27	4.07	4.84	4.42	4.33	4.14	4.10	4.25
		0.61	0.37	0.40	0.40	0.77	0.64	0.59	0.61	
		일차소득	43.72	42.67	44.00	44.57	49.07	48.87	50.56	51.09
		+사적 이전소득	32.14	31.83	35.39	33.94	40.14	37.87	41.50	43.44
		-11.58	-10.84	-8.61	-10.63	-8.93	-11.00	-9.06	-7.65	
18~ 64세	비장애인	+공적 이전소득	10.40	11.36	14.02	12.57	13.34	9.80	9.54	12.79
		-21.75	-20.46	-21.37	-21.37	-26.81	-28.07	-31.96	-30.65	
		-세금· 사회보험료	11.71	12.49	15.16	12.90	14.92	10.43	11.33	15.16
		1.31	1.13	1.14	0.34	1.59	0.62	1.79	2.37	
		일차소득	6.60	6.63	7.06	6.53	6.84	6.46	5.82	6.01
	장애인	+사적 이전소득	4.16	4.31	4.78	4.45	4.64	4.09	3.97	4.49
		-2.44	-2.32	-2.28	-2.07	-2.20	-2.37	-1.85	-1.53	
		+공적 이전소득	1.63	1.66	1.95	1.75	1.68	1.60	1.49	1.72
		-2.53	-2.65	-2.83	-2.71	-2.96	-2.49	-2.48	-2.76	
		-세금· 사회보험료	2.14	1.95	2.29	2.06	2.39	2.08	1.94	2.10
65세 이상	비장애인	0.51	0.28	0.34	0.31	0.71	0.48	0.46	0.37	
		일차소득	33.28	32.97	31.97	33.10	37.36	37.68	37.62	38.39
		+사적 이전소득	25.93	26.06	27.24	26.38	32.52	30.11	33.06	34.02
		-7.35	-6.91	-4.73	-6.71	-4.84	-7.57	-4.57	-4.37	
		+공적 이전소득	6.72	8.38	8.71	8.67	9.42	5.36	5.51	6.82
	장애인	-19.21	-17.68	-18.54	-17.72	-23.10	-24.75	-27.54	-27.20	
		-세금· 사회보험료	8.22	9.73	9.89	8.97	11.03	5.65	6.82	8.63
		1.50	1.35	1.18	0.31	1.61	0.29	1.31	1.82	
		일차소득	58.49	57.69	58.97	59.22	59.58	58.75	58.78	57.18
		65세 이상	비장애인	+사적 이전소득	38.49	37.73	40.89	43.40	43.49	43.68
-20.00	-19.96			-18.08	-15.82	-16.09	-15.07	-15.61	-13.95	
+공적 이전소득	17.45			17.68	20.94	18.52	15.24	15.07	15.26	14.26
-21.05	-20.05			-19.95	-24.88	-28.25	-28.62	-27.92	-28.97	
-세금· 사회보험료	18.72			18.60	21.71	19.51	16.36	16.63	16.62	16.17
장애인	1.28		0.93	0.77	1.00	1.12	1.57	1.36	1.91	
	일차소득		69.00	64.17	68.93	67.45	70.76	68.65	71.75	71.42
	+사적 이전소득		47.18	44.61	52.27	49.01	54.26	51.58	55.33	58.53
	-21.82		-19.56	-16.65	-18.45	-16.50	-17.07	-16.42	-12.89	
	+공적 이전소득		19.29	17.99	25.04	20.35	20.58	17.65	16.13	22.35
장애인	-27.89	-26.62	-27.23	-28.66	-33.68	-33.93	-39.20	-36.18		
	-세금· 사회보험료	20.14	18.63	26.10	20.75	22.13	18.86	18.71	25.62	
	0.86	0.64	1.06	0.40	1.55	1.21	2.58	3.26		

주: 균등화소득의 개인 단위 빈곤율, 빈곤선을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30%로 고정된 상태에서 각 소득의 빈곤율을 계산하였음. 하단의 수치는 전 단계 빈곤율과의 차이를 의미함.

자료: 오욱찬 외. (2020).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6-57. <표 2-9>.

요한다.

한편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의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 양상에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첫째, 횡단적 관점에서 근로연령층보다 고령층의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가 훨씬 작다. 예를 들어 2011~2018년 근로연령층의 중위소득 50% 기준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는 약 22~26%포인트이지만 고령층은 약 6~15%포인트이다. 즉, 전 생애에 걸쳐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빈곤하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비장애인의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는 노년기에는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가 크게 축소되는 것이다. 둘째, 시계열적 관점에서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는 그다지 변화하지 않지만 고령층의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는 시간에 따라 상당히 확대되었다.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을 살펴보면, 고령 비장애인의 빈곤율은 주로 공적연금의 성숙에 힘입어 2011년 46.81%에서 2018년 42.84%로 약 4%포인트 감소한 반면 고령 장애인의 빈곤율은 오히려 2011년 53.35%에서 2018년 57.82%로 약 4%포인트 증가하였다. 즉, 최근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시기에 노인 빈곤의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소득 원천별 빈곤율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을 분석한 <표 2>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2011년 전체 장애인 중 일차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58.66%

이다. 그런데 일차소득에 사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시장소득의 빈곤율은 51.78%이므로, 사적 이전소득이 빈곤율을 6.87%포인트 감소시킨 것이다. 추가적으로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하면 빈곤율이 16.16%포인트 감소하고,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면 2.85%포인트 증가한다. 이때 각 단계에서 빈곤선을 가처분소득 증위값의 50%로 고정된 상태에서 빈곤율을 계산하였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 2>를 살펴보면 개별 소득 원천이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는 비장애인이 약 3~4%포인트, 장애인이 약 3~7%포인트로 나타나 사적 이전소득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빈곤율을 좀 더 크게 감소시킨다. 시계열적 관점에서는 뚜렷한 패턴을 관찰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사적 이전소득이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를 축소하는 효과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공적 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는 비장애인이 약 5~6%포인트, 장애인이 약 13~19%포인트로 공적 이전소득이 장애인의 빈곤율을 훨씬 더 많이 감소시켰다. 그런데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의 경우 비장애인의 빈곤율을 약 3~4%포인트, 장애인의 빈곤율을 약 11~18%포인트 감소시켰고, 고령층의 경우 비장애인의 빈곤율을 약 15~23%포인트, 장애인의 빈곤율을 약 15~22%포인트 감소시켰다. 즉,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적 이전이 이루어지는 근로연령대에는 공적 이전소득이 장애인의 빈곤율을 더 크게 감소시키지만, 비장애인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는 노년기에는 공적 이전소득 빈곤 감소 효과의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거의 사라진다. 게다가 2014년 이후에는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후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가 시간에 따라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공적연금 성숙이 주로 고령 비장애인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3〉에서는 빈곤선을 가처분소득 증위값의 30%로 설정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일차소득 빈곤율의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시간에 따라 확대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비장애인의 일차소득 빈곤율은 약 13~14%로 대체로 유지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일차소득 빈곤율은 2011년 43.72%에서 2018년 51.09%로 증가하였다. 사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후에도 이러한 격차의 추이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다. 2011~2018년 장애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32.14%에서 43.44%로 약 11%포인트나 증가한 반면, 비장애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8.57%에서 10.40%로 약 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소득보장제도의 개입이 없다면 장애인-비장애인 극빈 격차가 시간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령 집단별 분석 결과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패턴이 관찰된다.

공적 이전소득은 횡단적으로 장애인-비장애인 극빈 격차를 크게 축소할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

으로 장애인-비장애인 극빈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근로연령층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장애인의 공적 이전소득 빈곤 감소 효과는 약 2~3%포인트에 그쳤지만 장애인의 공적 이전소득 빈곤 감소 효과는 2011년 19.21%포인트에서 2018년 27.20%포인트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극빈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는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후 대체로 사라진다. 고령층의 경우 시장소득 빈곤율의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약 6~15%포인트였으나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하면 경상소득 빈곤율의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약 0~8%포인트로 감소한다. 한편 2018년에는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상소득 빈곤율이 16.13%에서 22.35%로 약 6%포인트나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데이터 불안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추이인지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한 추이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2011~2018년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소득 평균과 시장소득 빈곤율의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크고 시간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사적

이전소득이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를 축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효과의 크기가 작고 사적 부양의 축소에 따라 향후 더욱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중 2011~2018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완화한 소득 원천은 공적 이전소득뿐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적 이전의 역할 없이는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완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둘째, 공적연금과 조세방식 소득보장제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공적연금의 성숙은 노후소득보장을 크게 강화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와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2011~2018년 공적연금의 확대는 고령 비장애인의 소득을 크게 증가시켰지만 고령 장애인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공적 이전소득은 시간에 따라 고령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고령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조세방식 소득보장 제도는 제도 확대의 영향이 즉각적으로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인의 극빈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적 이전 소득은 장애인의 중위소득 30% 기준 빈곤율을 20~32%포인트 감소시킨다. 또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극빈 가능성이 크지만 장애인 극빈층의 소득 수준은 비장애인 극빈층보다 높다.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는 비장애인 극빈층은 노인이 되더라도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지 못하지만, 장애인 수급자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과 같은 장애 관련 급여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단, 현재 소득보장제도가 장애인의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공적 이전소득이 지급된 후에도 장애인의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은 36~4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공부조 중심의 소득보장제도만으로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을 크게 완화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공적연금 수급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과 같이 장애인을 표적화한 소득보장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비장애인을 포괄하는 소득보장제도의 확대 역시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 축소에 크게 기여한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소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거하는 장애인 가구원의 소득을 증가시키기도 한

4) 이는 오육찬 외(2020)의 보고서 49쪽 <표 2-7>에 보고한 빈곤갭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비장애인보다 빈곤율이 높은 장애인의 소득을 더 크게 증가시킨다.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표적화하는 제도와 비장애인을 포괄하는 제도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 조합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태완. (2010).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과 불평등실태. 보건복지포럼, 164, 20-29.
- 오욱찬, 김수진, 김현경, 이원진, 오다은. (2020).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완식. (2007). 장애인의 소득분배구조와 근로연계 소득지원방안 연구. 장애와 고용, 17(2), 107-136.
- 윤상용, 김태완. (2009).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 및 장애 추가비용의 빈곤 영향력. 재활복지, 13(1), 61-83.
- 이선우. (2009).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따른 빈곤을 비교: 삶의 수준 접근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연구, 40(4), 431-452.
- 조윤화. (2014).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소득불평등 수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25, 5-32.

The Income Gap between Person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n Korea

Lee, Wonji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ersons with disabilities earn less income and experience higher rate of poverty. This study examined the income gap between person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using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e results show that the disposable income gap between person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has widened from 2011 to 2018, largely due to the increasing gap in labor income. While property income and private transfer income did not affect the increasing trend in income gap, public transfer income somewhat ameliorated the increasing income disparities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sults suggest that public income support programs need to be strengthened to reduce the income gap between person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